[붙임1]

탄 원 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탄원 요지

김기현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생산·사용되는 순환골재에 새로운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재활용과 업계의 생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 법률체계와 현장 여건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탄원서를 올리오니 저희의 절박한 사정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내용

불법 성토로 고통받는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순환골재를 불법·부적정하게 생산하거나 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행위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희 역시 품질을 지키고 적정한 사용을 안내하여 순환골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과 기준을 지키며 일해 온 사람들의 터전까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살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해 온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지, 함께 일해 온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건설폐기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선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순환골재로 만드는 일을 해 왔습니다. 정부의 재활용 정책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품질과 환경관리 기준에 맞추어 설비를 보완해 왔습니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도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쓰게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 일로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렇게 만든 순환골재는 사용될 곳으로 나가야 비로소 재활용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 기준에 맞게 생산해도 사용할 사람이 없다면 사업장에 쌓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설비를 보완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에는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지만, 사용할 곳이 줄어드는 문제는 저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이 허용되는 현장에서도 승인·시스템 입력·보고·환경조사 등의 의무가 함께 적용된다면 사용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량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현장에서는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다른 자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체가 사용자의 입력·보고 업무까지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반출 감소는 골재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재고가 쌓여 작업공간이 부족해지면 생산을 줄이고, 새로운 건설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는 일까지 줄여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급여와 시설 유지비,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의 일자리 하나에는 그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 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일해 온 사람에게 일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언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묻는 말에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건설현장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제때 받지 못하면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처리시설을 찾거나 더 먼 곳까지 운반해야 합니다. 대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철거와 후속 공정이 지연되고, 운반·처리비와 공기 연장에 따른 사업비·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질이 누적되면 주택 공급 일정과 비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처리업계와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법률의 취지도 살펴 주십시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천연골재를 대신할 수 있는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생산·사용해 온 순환골재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기존 관리체계와 현장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적법한 재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부적정한 생산과 사용은 엄단하되, 법정 기준을 충족한 정상적인 재활용은 분명히 구분하여 주십시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규제할 행위와 의무·제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현장에 부과하는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기준과 허용 용도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생산·사용되는 순환골재는 신규 준수의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불법행위는 차단하면서도 정상적인 재활용은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품질관리와 적정한 공급·사용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다시 쓸 수 있는 골재로 만들어 필요한 현장에 보내고,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사람들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재활용 정책을 믿고 갖춘 시설과 그곳에서 익힌 기술이 앞으로도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지키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다음 달에도 이 일터에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부디 사업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저희의 사정이 전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떠난 사람을 다시 부르고 멈춘 사업장을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법안을 심사하시는 지금, 저희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살펴 주십시오. 환경피해로부터 주민의 생활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 안에서, 성실하게 재활용에 종사해 온 사람들의 일터와 생활도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026년 12월 일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최종민

공동위원장 김동구

공동위원장 이필규

공동위원장 서주원

공동위원장 손종석

공동위원장 김영철

전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 종사자 일동